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75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정태호·오기형·최기상

황명선 · 이학영 · 강준현

김주영 · 진성준 · 박홍근

임광현 · 안도걸 · 정성호

신영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전할 것으로 기전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조·제24조·제46조의8·제63조·제74조·제87조·제91조의18·제91조의22·제100조의3·제104조의31·제107조의2·제108조의3·제109조·제122조의3·제126조의2·제146조의2 및 제92조·제98조의9·제99조의14·제104조의34·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50
-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 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 제6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①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인공지능"으로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6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 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 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제1항제9호"를 "제87조의19"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3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를 "「소득세법」 제107조에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

역)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 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 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 1) 제1호가목의 법인
 - 2) 제2호의 법인
-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총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 1.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 2.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한다.

-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 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 만원) × 2천7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frac{A}{B}$$
 × C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

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 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뺀 금액

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 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

득세법 시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 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 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있다.
-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 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 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 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 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 시설사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 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연세점송객용역거래계 또는 관광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 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 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제1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를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 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

- 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 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 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7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 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9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0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 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의 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납입한도는 제91조의18제3항제5호 계산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4천만원 × (1 + A) + 2천만원 × B - 누적 납입금액

- A: 가입 후 경과한 연수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
- B: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

- ③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

- 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 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 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 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1조(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 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 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 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 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 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 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 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1. "연구개발"이란 <u>과학적 또</u>	1.=1 <u>과학적 • 기</u>
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	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u>위한</u>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액감면) ①
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 중 <u>2024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	
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 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 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 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1

- <u>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u>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청년창 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 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50
 - <u>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u> <u>업한 경우</u>
 -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 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 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의 경우: 100분의 50
 -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2.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 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
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25
2.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 12월</u>
31일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1. ~ 7. (생략)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 다. <u>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u> 산 매매 및 중개업
- 9. ~ 18. (생 략)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

1 0 /원웨리 키스)
1. • 2. (현행과 같음)
3
1. ~ 7. (현행과 같음)
8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u>가상자산</u>
9. ~ 18. (현행과 같음)
(4)
00071 1
<u>2027년 1</u>
2월 31일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 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 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 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 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

i
⑤ (현행과 같음)
<u></u>
<u>2027년 12월 31일</u>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 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 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 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 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 우는 제외한다.

- 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 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50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 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 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 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 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 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 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 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 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 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 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 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나. 구도전(구도전파틸익세전
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
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u>창업한 경우: 100분의 50</u>
⑦
<u>업중소기업</u>
제1항
및 제6항에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1. (생략)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 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0 직전 과세연도의 100 상시근로자 수

⑧ ~ ⑫ (생 략)<신 설>

•	
1 /취궤기 가수)	
1. (현행과 같음)	
2	
	- <u>제1항,</u>
제5항 및 제6항	

- ⑧ ~ ⑫ (현행과 같음)
- ①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 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 감면 업종

가. ~ 하. (생 략)

거. 정보서비스업(<u>블록체인</u> <u>기반 암호화자산</u>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 부. (생 략)

2. ·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는 그 소파하는 금액은 삼년하
지 아니한다.
세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1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u>가상자산</u>
,) H /귀피 -) 스)
너. ~ 부.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110조(여구·이런개발비에 대하
ii i i j 소 (역 구 • 의 역 개 발 미 에 - 기 하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 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 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 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세액공제) ①
<u>2027년 12월 31일</u>
1

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 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 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 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

 フト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u>100분의 10</u>

- 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 도로 한다.
- 2. 연구 · 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 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 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 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 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 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 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2
<u>바이오</u> 의약품, 방위산업, 인공지능
가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 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 구 ·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현행과 같음)

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분의 25(중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생 략)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
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
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
<u>는 100분의 50]</u>
_
다
1) (현행과 같음)
2)
7ト)

터 3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까지: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 4) (생략)

② ~ ⑥ (생 략)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저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 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 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 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 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 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제12조

<u>100분</u>
<u>의 20</u>
 나)
100분의 15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 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 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 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 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대한 세액공제) ①
<u>2027년 12월 31일</u>
<u>100분의 5</u>
1. (현행과 같음)
2 <u>최초취득일부터 2</u>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 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 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 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 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 할 것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 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 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 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

3. ~ 5. (현행과 같음)
②

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 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 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u>창투조합등</u>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

1.•2. (현행과 같음)
3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벤처투자조합등</u>
③ ~ ⑤ (현행과 같음)
J12ス(베눠트가히사 드이 즈시야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식 또는 출자지분가. ~ 마. (생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

도차익 능에 대한 비과세)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u>벤처투자조합등</u>
가. ~ 마. (현행과 같음)
/r. ~ 마. (현행과 끝름)
4

법인등"이라 한다)이 <u>창투조</u>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5. (생략)
-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생 략)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 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 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은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을</u>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 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u>벤처투자</u>
조합등
r (원웨코 가O)
5. (현행과 같음)
6
<u>벤처투자조합등</u>
7. (현행과 같음)
②
<u>벤처투자조합등</u>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 5. (생략)
-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 4. (생 략)
- ④・⑤ (생 략)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

	·•
1. ~ 5. (현행과 같음) ③	
<u> 처투자조합등</u>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정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u>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u>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 ⑥ (생 략)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제

•

1. (현행과 같음)
2
메리트카크워디
<u>벤처투자조합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
1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 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 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 (현행과 같음)
2
벤
느 처투자조합등
_
3
- <u>벤처투자조합등</u>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 식등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 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 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을</u>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 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1. ~ 4. (생 략)
- ③·④ (생 략)
-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전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

②
<u>벤처투자조합등</u>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
<u>2027년 12월 3</u>
1일

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 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 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u>2027년 12월 31</u>
일

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 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 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 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 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 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 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

1 0 (=l =l =l 0)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u>2027년 12월 31</u>
<u>일</u>

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 득세를 과세한다.

- 1. 2. (생략)
- ② ~ ⑩ (생 략)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 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
1.•2.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세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रहमाना पार्च यान्वया वि
2027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 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u>100분의 10</u>
2
2027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u>서 같다)</u>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 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u>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u> 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파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견기업의 경 우: 100분의 6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u>가)</u> 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 자 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의 경우: 1000분의 7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 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생략)

② ~ ⑤ (생 략)

일부개정법률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5	<u>)</u>			
	다)	나)에	해당	하지	아니
	3	하는 -	중견기	업의	경
	_	우: 100	분의	<u>5</u>	
	라)	가)부터	를 다).	까지	외의
	2	경우: 1	00분의	<u> </u>	
나.					
			<u>10</u>)분의	10-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 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 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 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 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 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 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 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 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

제87조의19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
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 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 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 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 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 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 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 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 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 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 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
<u>3년</u>
<u>.</u>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2. (생 략)
- ②·③ (생 략)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생 략)
 -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 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 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⑨ (생 략)

일부개정법률

-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 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 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 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 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 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

-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현행과 같 음)
 - (8) ----------제30조의5제8항부 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0

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

독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서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1. (생략)
- 2. 10만원 초과 <u>5백만원</u>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 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③ (생 략)

고 산술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세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2천만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저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 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 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 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 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 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 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 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0]
전하는 기업이	에 대한	세액김	면
등) ①			
			. — —
	. <단서	삭제>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한 기업일 <u>것</u> <<u>단서 신설></u>

-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u>수도</u> 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 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 사"라 한다)가 수도권과

1
가
<u>것.</u> 단
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
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u>수도</u>
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박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u>지역)으로</u>
다
1)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생략)

-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u>수도권(중소기업</u>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수도권(중소기업은 <u>수도권과</u> 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u>수도권 안</u>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O) (청체코 가O)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 밖(중소기
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3수도권 중
<u>, </u>
<u>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u> -
수도권
의 인구감소지역

③ ~ ⑥ (생 략)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 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u>영</u> 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⑧・⑨ (생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 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 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 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 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공</u> 장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
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
<u>던</u>
⑧・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u>것</u> <단서 신 설>

다.·다. (생략) 2.·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u>.</u>
1
가
<u>것.</u> <u>다만, 본사의</u>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본</u> 사의 이전등
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
위하던

⑥·⑦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 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 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 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 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

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

⑥·⑦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지등

가. ~ 마. (생 략)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

 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

 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아. (생 략) 2.·3.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_____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1) 「수산업법」 제2조제7 호의 어업권
 -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 3) 「양식산업발전법」 제2 조제8호의 양식업권

사. • 아. (현행과 같음)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 등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

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 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 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 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 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 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 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 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 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 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 제29조를 적용하는 경 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 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 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 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
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u>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①

다.

- 1. 2. (생 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가. ~ 다. (생 략)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 사. (생 략)

<신 설>

4. ~ 9. (생략) ② ~ ④ (생 략)

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 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

1. ·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암관리법」-----

마. ~ 사. (현행과 같음)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 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 단
 - 1) 제1호가목의 법인
 - 2) 제2호의 법인
 -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 인
- 4.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 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 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 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 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다.

③ ~ ⑤ (생 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 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 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 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u>8천만원</u>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u>500</u>만원
-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 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 하인 경우: 300만원
- 3. (생략)
- ② ~ ⑧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 / 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해당과세기간중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1
<u>600</u> 만
<u>원</u>
2
<u>400만원</u>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
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u>세</u>
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
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
<u>다)</u>

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 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 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 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 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면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

,
③
1

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u>세</u> 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 입대상으로 할 것 가.·나. (생 략)

2.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 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 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 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세대의 <u>세대주임을</u>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 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 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u>세대</u>
주등으로서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4
세대주등에 해당하
<u>는지 여부를</u>
1. • 2. (현행과 같음)
5

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⑥ ~ ⑨ (생 략)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 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생략)
-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u>세대주등에</u>
<u>해당하는지</u>
-, · · · · · · · · · · · · · · · · · · ·
⑥ ~ ⑨ (현행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①
_
10
①
①
①
①
① 1. (현행과 같음) 2
①
①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 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 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생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 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는 제1항을 적용받는 <u>배당소득</u> 및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원천징</u> 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 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④ <u>원천징</u>
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 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 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1. 2. (생략)
- ⑤ · ⑥ (생 략)
-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 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 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 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 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 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 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
1.·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
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_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 구하는 경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
 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
 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
 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 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 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 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 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 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 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 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 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 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 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 1. 2. (생략)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가. ~ 다. (생 략)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경우: 200만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 4. (생 략)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 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
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2
1
<u>1천만원</u>
가. ~ 다. (현행과 같음) -
2
<u>500만원</u>
③
1. ~ 4. (현행과 같음)
5 <u>2억원</u>

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 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 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④ ~ ⑥ (생 략)
-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 득세법 _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 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 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 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도 인터기 - 기격 비빔ㅁㅋ
④ ~ ⑥ (현행과 같음)
7
득세법」 제130조
8

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u>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 1.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 된 세액
-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 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⑨ ~ ⑫ (생 략) <신 설>

	<u>이자·배딩</u>	당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
조를 적용하여	여 결정된 세	<u> 액</u>
<u><삭 제></u>		

<삭 제>

- ⑨ ~ ① (현행과 같음)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 좌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 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 입 · 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 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 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총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 다.

- 1.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 2.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 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 주자가 18세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

<u>(14)</u>	 	 	
	 	 <u>7</u>	계산빙
<u>법</u> -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 략)
 -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 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 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④ ~ ⑥ (생 략)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제91조의23(개인투자용 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한 과세특례) ① ----

<u>2025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3년</u>
<u>.</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 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 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 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 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2027년	12월	31일
			
4 0 (=1 =1)	a _a &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
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
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 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 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 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 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 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 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 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 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 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00	10 (0) 1	_ ',' - C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 -			

제96준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법 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법

<u>2025년</u>	12
월 31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	Z -1)
	/ > FH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세특

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 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 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 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 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점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 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 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
한 과세특례) ①
· · · · · · ·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 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 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 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 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2027년 12월 31일
<u> </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 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 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u>것</u>
-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u>것</u>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	
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	
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	
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	
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	
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u>.</u>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1
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	가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기회발전특구(<u>같</u>	인구감
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u>소지역 및</u>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	
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	
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_
는 동에 소재할 것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2)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u>থ</u>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u> 구감소지역</u>
규형박저에 과하 특벽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나. (생 략)

2. (생략)

② ~ ⑧ (생 략)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합계액(이하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아나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수 있다.

- 1. (생략)
- 2. <u>2023년 12월 31일</u>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u>
·
3)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
납액 징수특례) ①
·.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 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
 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
 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
 속하고 있을 것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u>2026</u> <u>년 12월 31일</u>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할 것
- 3. ~ 6. (생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 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 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 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한다.

가 <u>2027년</u>
12월 31일
나 <u>2027년</u>
12월 31일
 3. ~ 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2028년 12월 31일

- ④·⑤ (생 략)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 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 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 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 징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⑦ ~ ⑩ (생 략) <u><신 설></u>

④·⑤ (현행과 같음)
6
<u>.</u>
1. ~ 5. (현행과 같음)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
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 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 연금 수급자일 것
-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 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 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 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삭 제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미만일 것.

4) (1)
2
۵.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 3. 삭 제
- 4.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삭 제
-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 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 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생략)
-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생 략)
 -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1) (생략)
-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 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생략)
- 3. (생략)
- ⑥·⑦ (생 략)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1) (현행과 같음)
2)
<u>.</u>
- <u>하며,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
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
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u>한 것으로 본다</u> .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1.·2. (현행과 같음)
3
o.

앤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 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 액 등 - 1천700만 원)× 2천1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
 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

_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 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 액 등 - 1천700만 원)× 2천7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 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frac{A}{B} \times C$$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

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
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
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
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
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 ⑤ (생 략)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생 략)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 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 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 액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 ⑤

- 1. (생략)
- 2. <u>하반기</u>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⑥ ~ ⑧ (생 략)
-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 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 업의 <u>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u> 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⑨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상반기</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
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2029
<u>년 12월 31일</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8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
<u>득, 법인세 납부 실적,</u>
(9)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한 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 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2조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 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 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 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 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
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200
7.3.100 210
<u> 7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u>2027년 12</u>
월 31일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 ⑦ (생 략)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_ 제22조에 따라 추진 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 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 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
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
금산입) ①
2027
년 12월 31일
4 0 (5) 5) -1 0)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로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
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소</u> 득금액에
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
이월된 금액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
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

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 저 공제할 것
-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월공제배당금액부터----⑤ (생 략)

<신 설>

다 작은 경우에는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 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 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 1. 이월공제배당금액-----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

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 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 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 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 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 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 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 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5개 과세기간의 당도 당한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 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 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 ② (생 략)
- ③ 4 삭 제
-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⑥ (생 략)
 -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부터 추정한다. <단서 신설>

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
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u>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다만, 일반택시 운송사</u>
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1. · 2. (생 략) ⑧ (생 략) <u><신 설></u>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 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 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 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 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 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 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 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 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 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

<u>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u> <u>하여야 한다.</u>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
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
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 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 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 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 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 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 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 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 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 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 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 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 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 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

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 작성적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백」제48조,제49조 및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 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

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 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 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 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 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 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 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 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관광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 다.

-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 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례적용</u> 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례적용관광호텔</u>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u>특례적용관광호</u> <u>텔</u>,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특례적
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
3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④
특례적용관광숙박
<u>기설</u>
<u>기 근</u>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서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 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 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세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
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
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
<u>업자</u>
금거래계좌, 스크랩등
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
<u>는 관광사업자</u>
금거래계
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
점송객용역거래계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 동차에만 적용한다.
- ④·⑤ (생 략)
-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⑦・⑧ (생 략)
-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저

∥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다	}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현행고	ŀ
같음)	
②	_
1 <u>70</u> 만원	_
	_
2 <u>70</u> 만원	_
<u>70</u> 만원	
③	_
2026년 12월 31일	_
	_
<u>.</u>	
④·⑤ (현행과 같음)	
6	_
2026년 12월 31일	_
	_
<u>.</u>	
⑦·⑧ (현행과 같음)	
9	_
2026년 12월 31일	_
	_
· ¶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니]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 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료비 등 공제) ①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 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 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 의 20 이상인 경우
-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 료비 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 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 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 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 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 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 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⑥·⑦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 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 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 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 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 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 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나. (생 략)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u>도서등사용분</u>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
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1.・2. (현행과 같음)
3
<u>문화체육사용</u>
<u>七</u>
문화체육사
용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
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
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런어의 월요인 사용는 네동 령령으로 정한다.
1
문화체육사용분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5
<u>문화체육사용분</u>
6
가. (현행과 같음)
나

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u> 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직불카드등사 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 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u> 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삭 제

2) (생략)

7. (생략)

8. 삭 제

③ ~ ⑩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문화체육사
용분
다
1)
<u>문화체육사용분</u>
<u>문화체</u>
<u>육사용분</u>
2)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 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 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 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 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 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 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

③ (현행과 같음)
4
<u>제6조</u>

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 ① (생 략)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자소득 비과세 · 감면세액의 추 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 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 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 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 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 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 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 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 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 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u>.</u>
⑤ ~ ⑪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정) ①
<u>o</u>]
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
<u>수의무자</u>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 략)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 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 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 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